건설교통신문, 독자 · 기업과 함께합니다
깊이 있고 알찬 전문 정보
편리한 교통·튼튼한 건설
광고안내:792-9255

23 건설교통신문 창간 1988
창간 23주년

건설교통신문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주간 제1303호
THE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EWS
구독안내 : 02)792-9255

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 · 발표

교통안전대책 보행자 안전과 편의 최우선

정부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도로분야의 경우 차량소통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 ·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 · 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여,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 ·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 · 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하여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여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 · 지방도 500여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시범도시를 선정 · 지원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 · 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교통안전 · 문화지수 등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존 TV 및 라디오와 블로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항공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해 나가며,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해양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뜨거운 관심'

개관 이후 주말 모델하우스에 2만 5천여 인파 다녀가

현대건설이 지난 20일 문을 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폭우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뜨거운 관심은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가 해운대 전체를 아우르는 특급조망, 타 아파트와 차별화된 격조높은 디자인과 설계, 지하철 중동역과 인접한 탁월한 교통환경 등으로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고객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인근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첫날에 약 5천여 명이 다녀갔다.

토요일인 5월 21일에는 8천여 명의 인파가, 일요일인 5월 22일에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자료 2면 ➜)

작년 전국 일평균 교통량 역대 최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와 버스 2.4%, 화물차 4.1%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주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교통량 조사결과, 전국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2,733대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와 버스 2.4%, 화물차가 4.1% 증가했으며, 도로별로는 고속국도 교통량이 5.4%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는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제87조에 따라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연도별 교통량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교통량이 2008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도로별 교통량은 전년 대비 고속국도 교통량이 5.4%, 지방도는 1.6%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는 1.1% 감소했다. 노선별 교통량은 자유로(일반국도77호선, 성산대교-장항IC)의 교통량이 하루 약 27.6만대로 가장 많았으며, 1개 차로당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송내-서운)로 조사됐다.

차종별 교통량은 전년 대비 승용차와 버스 교통량이 2.4%, 화물차는 4.1% 증가했다. 한편 지역별 교통량의 경우는 경기지역 교통량이 3만 4천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타 지역 평균 교통량의 약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를 이달중 발간해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도서관, 협회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일반 국민을 위해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 에서 2010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지도, E-Book 등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세대 · 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주택법 시행령 · 및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 · 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사업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리츠 · 펀드 등도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25일 부터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세대 · 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 · 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 대상 법인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가능하며,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 ·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주택법 시행령은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토지시장 안정세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 비도시 · 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 · 비도시 지역은 개발 · 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 · 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 · 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 · 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 · 군 · 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